#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5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성일종·박덕흠·고동진

김승수 · 강대식 · 인요한

강선영 · 서명옥 · 백종헌

송석준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'27년에 약 13 5.1천m³/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(대청댐, 대호지, 아산호, 해담)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.

한편,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기존의 수원인 해수담수와 비교해볼 때 취수시설 간소화, 전력비 절감 등 사업 경제성에 이점이 있고 탄소배출량을 연간 약 4천톤 저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대체수자원으로 적합하지만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을 규정하여 재이용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 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발전소 온배수"를 "온배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의2 중 "발전소 온배수"를 "온배수"로, "발전과정"을 "발전과정 또는 산업시설의 생산공정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9호 중 "발전소 온배수"를 각각 "온배수"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"재이용시설"을 "재이용시설, 온배수 재이용시설"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재처리수"를 "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"물의 재이용"이란 빗물, 오	1		
수(汚水), 하수처리수, 폐수처			
리수 및 <u>발전소 온배수</u> 를 물	<u>온배수</u>		
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			
하고, 그 처리된 물(이하 "처			
리수"라 한다)을 생활, 공업,			
농업, 조경, 하천 유지 등의			
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			
다.		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		
6의2. " <u>발전소 온배수</u> "란 취수	6의2 <u>온배수</u>		
한 해수를 발전소(원자력발전			
소는 제외한다)의 <u>발전과정</u> 에	<u>발전과정 또는 산</u>		
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	업시설의 생산공정		
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			
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			
를 말한다.			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		
7의2. "온배수 재이용시설"이란	7의2		
<u>발전소 온배수</u> 를 재이용할 수	<u>온배수</u>		
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			

부속시설, 공급관로를 말한다. 8. (생 략)

9. "온배수 재이용사업"이란 온 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, 처리된 물 (이하 "온배수 재처리수"라 한다)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10. (생략)

제23조(재정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·폐수처리수 <u>재이용</u>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 ·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.

 8. (현행과 같음) 9
<u>온배수</u>
10. (현행과 같음) 제23조(재정지원 등) ①
<u>재이용</u> 시설, 온배수 재이용시설
<u>재처리수 또는 온</u> <u>배수 재처리수</u>